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21. . .

의 결
사 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발의연월일	2021. 7. .
발 의 자	윤종호 의원 외 6명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1. 7. .
발 의 자 : 윤종호·김낙관·김영길
신문식·이지연·장미경
장세구 의원(7명)

1. 제안이유

지역 현안 사항인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의 위원수 확대와 활동기간을 연장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수 확대

- 당 초 : 7명
- 변 경 : 11명

나. 활동기간 연장

- 당 초 : 2021년 1월 28일 ~ 2021년 9월 임시회 종료 시까지
- 변 경 : 2021년 1월 28일 ~ 2021년 12월 제2차 정례회 종료 시까지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